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1절
공통 규정

제2.1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2.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소비된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실제로 소비되거나,
- 나. 상품의 가치, 형태 또는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형되거나 다른 상품이 될 정도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제조된 것

유통업자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상업적 유통, 대리, 양여 또는 대표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은 그 구성부품, 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스포츠용으로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이란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 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수입허가란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에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외의 것)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이행요건이란 다음 요건을 말한다.

-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출될 것
- 나.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입 상품을 대체할 것

- 다.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선호를 부여할 것
- 라.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 또는
- 마.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 또는 수출액, 또는 외환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그러나 다음 요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바. 수입상품이 추후 수출될 것
- 사. 수입상품이 추후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것
- 아. 수입상품이 추후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또는
- 자. 수입상품이 추후 수출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제2절 내국민 대우

제2.3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3절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2.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

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3. 당사국은 원한다면 언제라도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일방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 당사국은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 절차가 완료된 직후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 공한으로 통보한다. 그와 같은 개정은 외교 공한에 기재된 날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통보로부터 90일 이내에 발효한다. 그에 규정된 일방적 가속화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한 어떠한 양허도 철회되지 아니한다.

4.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시점에서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인하할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2.5조 동결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 이는 당사국이 다음을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가. 제2.4조제2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인하한 관세를 다음에서 설정된 수준 중 더 낮은 것까지 인상하는 것
 - 1)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 또는
 - 2) 제2.4조제2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것, 또는
-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제4절 특별 제도

제2.6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 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과학연구, 교육 또는 의학 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언론매체 또는 텔

레비전에 사용되는 장비, 그리고 영화촬영 목적에 사용되는 장비와 같은 전문 장비

- 나. 전시회, 박람회, 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 다. 상업용 견본품, 그리고
-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국 국내법에 따라, 처음에 정하여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채권이나 담보의 공탁을 수반할 것
- 라.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6개월 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될 것, 그리고
- 사. 그 상품이 당사국 국내법에 따라 그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통상적으로 부과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 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재수출되도록 허용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수입자 또는 다른 인이 불가항력의 이유로 그 상품이 파손되었다는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면, 그 상품을 재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국의 관세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제2.7조

광고 목적이거나 견본으로 사용될 상업적 가치가 없는 물품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광고 목적이거나 견본으로 사용될 상업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제5절 비관세조치¹

제2.8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가호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의 채택을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과 그 이유를 그 금지 또는 제한의 성격 및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양 당사국은 제1항에 의하여 통합된 1994년도 GATT상의 권리 및 의무가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제한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가.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명령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수출 및 수입 가격 요건

나.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협정 제8.1조에 따라 이행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수출제한

4. 당사국이 상품의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비당사국으로의 수출에 대하여

¹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관련된 비관세 조치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과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서 각각 다루며, 따라서 이 절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제2.15조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음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그 비당사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또는

나. 그 당사국의 상품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소비되지 아니한 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비당사국으로 재수출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

5. 당사국이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격설정, 마케팅 또는 유통 체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왜곡을 피할 목적으로 협의한다.

6.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항은 당사국이 제6항에 언급된 인에게 자국의 규제 당국과 그 인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수입허가

1.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²

2. 가.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절차가 있을 경우,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그 통보는

1)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2)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한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30일 전에 그렇게 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이 수입허가절차에 대하여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그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² 제1항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그 협정에 포함된 “수입허가”의 정의를 적용한다.

제2.10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상의 의무와 합치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현행 목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유지한다.

제2.11조 국영무역기업

1.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17조, 그 주해 및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라 규율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국영무역기업의 개별 사례,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방식 및 그 운영이 양자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당사국은 비밀정보에 관한 1994년도 GATT 제17조제4항라호를 저해함이 없이 가능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제2.12조 무역 관련 비관세조치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의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어떠한 그러한 조치도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각 당사국은 그와 같은 모든 조치의 공포와 발효일 사이에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2.13조 작업반 설치

1. 제2.16조제3항다호에 따라, 양 당사국은 비관세조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협의의 진행을 위하여 각 당사국의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작업반을 상품무역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
2. 작업반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고, 모든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그 검토 결과를 양 당사국에게 되도록이면 12개월 내에 제출한다. 작업반의 검토 결과와 권고사항은 검토 및/또는 조치를 위하여 상품무역위원회에 회부된다.

제2.14조
관세율할당 운영

1. 부속서 2-가에 규정된 대로 관세율할당을 수립한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3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 수입허가협정 및 그 밖의 모든 세계 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이러한 관세율할당을 이행하고 운영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율할당 운영 조치 및 이행이 일관되고 투명하도록 보장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차별을 유발하기 위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2.15조
검사기관 지정

각각의 법률 체제의 규정과 요건을 감안하여, 권한 있는 당국은 식품과 화장품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검사기관 지정을 통하여 검사 결과의 상호 인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장려된다.

제6절
제도 규정

제2.16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최소 매년 1회 회합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더 자주 회합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을 증진하는 것
 - 나.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대한 장벽, 특히 비관세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 다. 필요한 경우 작업반을 설치하고 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 그리고

- 라.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호부터 다호까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 유형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

- 가.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나.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다.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라.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0-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8년차까지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9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마.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바.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2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사.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PR-1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1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90퍼센트가 유지된다.
- 아.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PR-2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2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80퍼센트가 유지된다.
- 자.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PR-3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3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70퍼센트가 유지된다. 그리고

차.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2. 상품에 대한 각 관세 인하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각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다.

3.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또는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한국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중국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0.1위안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4.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5.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 관세양허표

일반 주해

1. 한국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2년 1월 1일에 발효 중인 한국의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3. 양허단계 : 부속서 2-가의 제1항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20-A, 20-B, PR-1 및 PR-130을 포함한다.
 - 가. 단계별 양허유형 “20-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0년차까지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나. 단계별 양허유형 “20-B”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2년차까지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13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다. 단계별 양허유형 “PR-1”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에 기준세율의 1퍼센트를 인하한다. 그리고
 - 라. 단계별 양허유형 “PR-13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종가세 130퍼센트로 인하하고,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종가세 130퍼센트가 유지된다.

중국 관세양허표

일반 주해

1. 기준관세율 :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2년 1월 1일에 발효 중인 중국의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2. 양허단계 : 부속서 2-가의 제1항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15-A, PR-8, PR-15, PR-35 및 PR-50을 포함한다.
 - 가. 단계별 양허유형 “15-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0년차까지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나. 단계별 양허유형 “PR-8”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8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92퍼센트가 유지된다.
 - 다. 단계별 양허유형 “PR-1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1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85퍼센트가 유지된다.
 - 라. 단계별 양허유형 “PR-3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3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65퍼센트가 유지된다. 그리고
 - 마. 단계별 양허유형 “PR-5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5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50퍼센트가 유지된다.

부록 2-가-1

한국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한국이 적용하는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한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중국의 원산지 상품에는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을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SK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중국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한국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어떠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도 산입되지 아니한다.

2. 가.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번호	HSK 2012	품목	연간 물량 (메트릭톤)
1	0301999020	복어(활어)	140
2	0301999070	미꾸라지(활어)	3,200
3	0302899040	아귀(신선한 것/냉장한 것)	17
4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Thunnus obesus)](냉동한 것)	270
5	0303899060	아귀(냉동한 것)	1,900
6	0307511000	낙지(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6,100
7	0307591020	낙지(기타)	19,400
8	0307714000	바지락(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15,800
9	0307791030	바지락(냉동한 것)	330
10	0307793020	바지락(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90
11	0713329000	팥(기타)	3,000
12	1107100000	맥아(볶지 않은 것)	5,000
13	1108191000	그 밖의 전분(고구마로 만든 것)	5,000
14	1201903000	대두(콩나물용)*	3,000
15	1201909000	대두(기타)*	7,000
16	1207400000	참깨	24,000
17	1605542091	조미오징어	980
18	1605542099	오징어(기타, 조제한 것/보존처리한 것)	1,300
19	1605592090	소라(기타, 조제한 것/보존처리한 것)	7

* 주: HSK 1201903000 및 1201909000에 대한 관세율할당은 식용대두(IP)로 한정된다.

- (1) IP 대두란 95퍼센트 이상의 단일종 대두를 포함하고 이물질은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나의 선적분의 대두를 말한다.
- (2) IP 대두는 벌크로 선적될 수 없으며 포대나 컨테이너로 선적된다.

20	1605639000	해파리(기타, 조제한 것/보존처리한 것)	4
21	2308009000	식물성 물질 및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기타)	38,000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의 제1항차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된다.

3. 각 연도에 걸쳐 당사국의 운영당국은 각 관세율할당의 운영절차,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 물량을 운영당국이 지정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시의적절하게 공표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운영을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한다. 한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관세율할당 운영에 관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품무역위원회의 차기 회의에서 협의한다. 협의 시 양 당사국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한다.